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규칙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 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시행규칙 목적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방법, 작성내용, 보완·조정·반려 등(제2조~제5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작성 내용, 전문검토기관 의견수렴 제외사업,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조정·반려에 대한 근거다. 평가준비서 작성,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

(제6조~제1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준비서 작성 내용, 심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 평가서 초안 등의 작성내용, 공청회의 의견 진술,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 사유 및 평가서의 보완·조정·반려

라. 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 대상사업 통보시기, 관리대장 내용 및 관리, 관리자 자격,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제13조~제17조)

- 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가능한 사항, 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등 통보의무 및 시기 규정, 협의의견 관리대장 내용 및 비치장소 규정, 협의의견 관리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결과보고 시기 등 규정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제18조~제19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변경)등록, 재대행,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권리·의무의 승계 등(제20조~제30조)

- 대행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재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 업무의 폐업·휴업신고 절차 등,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대행실적의 보고 내용, 대행실적 관리·증명서 발급·공고

사.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의뢰(제31조~제3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연구·조사 자료 사용료에 대한 규정, 관계기관

에 연구·조사 의뢰 가능한 근거 규정

아.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업무(제33조)

- 정보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제34조)

-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사업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① 해양이용·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및 대상지역의 설정
3.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

4.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5. 해양환경영향조사

② 사업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입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에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신청, 「수산업법」 제14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기간 변경, 바지선 및 해상크레인 등 인공구조물 설치 없이 공유수면을 일시점용하는 경우에 관한 협의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④ 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이하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반려) 법 제12조제4항 및 제

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협의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요청해야 한다.

제6조(평가준비서 작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및 대상지역의 설정
3.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방안
4.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방안

② 그 밖에 평가준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반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및 대상지역의 설정
3. 평가항목·범위·방법의 결정 및 조치사항
4.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5. 해양환경영향조사
6.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계획
7. 대안설정 및 종합평가

② 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서 초안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공청회의 의견 진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업대상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재청취 사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
우
3.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이하 이 조에서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2조제1항
에 해당하여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영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개요, 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5.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려는 경
우에는 영 제9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끝나는 날(설명회등을 개최한 경
우에는 설명회등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청취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2.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 재청취를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 재청취를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1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지역개황 및 대상지역의 설정
3.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
4.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5. 해양환경영향조사
6.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사항
7. 대안설정 및 종합평가

② 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평가서의 보완·조정·반려) 평가서의 보완·조정·반려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3조(협의완료 전 공사금지의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해양안전 시설 및 해양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 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14조(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통보시기 등) 법 제26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관리대장의 내용 및 관리)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관리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① 사업자는 별표 4의 자격기준

을 갖춘 자를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이하 “관리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사업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의견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의견의 사업계획 반영여부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의견의 이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리담당자의 지정기간은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7조(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등) ①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처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착공한 날부터 매년

연도별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1. 해양환경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
2. 서식지 보전대책의 마련
3. 해양환경 영향을 줄이기위한 공법의 변경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진 항목
2. 법 제21조제1항에따른 의견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⑤ 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 해양환경영향조사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5항의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8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은 참여기술자의 능력 및 업체능력 등으로 평가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발주청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사업의 발주처명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평가대행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게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참여신청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평가대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세부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말한다)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각각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3.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② 평가대행자는 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① 평가대행자는법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재대행할 수 있다.

1. 수온, 염분, 조류, 해류, 조위 등 해양물리 분야의 조사·분석
2. 해수유동, 부유사 확산, 해안선 변화 등 모델링
3. 해양 수질, 퇴적물 분야의 조사·분석
4. 해양생태계 분야의 조사·분석
5. 소음·진동, 전자기장 등 위해요인의 조사·분석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 승인 신청,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5

조제3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36조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제27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제28조(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행업무 실적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의 체결,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및 이행실적을 말한다.

② 평가대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 보고서에 대행 업무 실적 및 대행계약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9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행실적 관리 및 증명서 발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대행업무 실적,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 현황 및 기술인력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 실적
2.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평가대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30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행실적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대행업무 비용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 실적
2. 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제31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1장에 40원
 2. 전산자료를 전산보조장치로 제공하는 경우: 1장에 30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제32조(연구·조사의 의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경우에는 연구·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기능별로 정보지원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요청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사실 등에 관한 정보
6.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휴업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사실 등에 관한 정보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의 등록
9.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당해연도 평가대행업무실적 및 행정처분실적 등에 관한 정보
10.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실적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③ 그 밖에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적정성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3. 운영경비 조달 계획의 타당성

②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6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양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2항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제28조제2항제7조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

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첨부서류 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첨부서류 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제도의 운영·개선

8.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9.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의 운영

10.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

11. 해양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③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가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제2호의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가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 제2호의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가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로 한다.

④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부터 별표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의2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제2조 관련)

1. 해양이용협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분야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적정성 평가 분야	공간이용	○ 사업 대상 해역에 설정된 각종 공간 계획 현황(해양공간계획, 항만·어항계획 등 포함) ○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 각종 법정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사회경제	○ 사업 시행에 따른 인구변화 및 고용효과 ○ 선박 통항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 해양레저·관광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 수산업 활동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환경성 평가 분야	해양물리	○ 수온, 염분, 파랑, 조석 등 해양물리 현황 및 분석 결과 ○ 해수유동 변화 예측, 부유사 확산 예측 및 영향의 범위 ○ 해양물리 특성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해양수질·퇴적물	○ 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수질·퇴적물 현황, 예측·평가 및 저감 방안 ○ 사업 시행에 따른 작업공정별 발생 오염원 분석 ○ 해양환경기준(해수수질·해저퇴적물)과의 적합 여부 및 기준 초과 시 해양수질·퇴적물 관리 방안
	해양지형	○ 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지형 현황 ○ 사업 시행에 따른 해양지형의 변화 예측(해안선 변화 포함) ○ 해양지형의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부유생태계	○ 동·식물 플랑크톤의 현황 및 분석 결과(종조성, 군집구조, 분포 등) ○ 사업 시행에 따른 부유생태계 영향 예측 및 평가 ○ 부유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저서생태계	○ 저서생태계(조간대, 조하대의 저서동물, 해양식물 포함)의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에 따른 저서생태계 영향 예측 및 평가 ○ 저서생태계(법정 보호생물 포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유영생태계	○ 어류 등 유영생물의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에 따른 유영생태계 영향 예측 및 평가 ○ 유영생태계(법정 보호생물 포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위해요인	○ 사업 대상 해역의 위해요인(경관·빛, 소음·진동, 전자기장 등)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에 따른 위해요인 예측·평가 및 저감 방안
--	--------------------------------------

비고

1. 법정 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을 말한다.
2. 법정 보호생물은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말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분야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적정성 평가 분야	공간이용	○ 사업 대상 해역에 설정된 각종 공간 계획 현황(해양공간계획, 항만·어항계획 등 포함) ○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 각종 법정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사회경제	○ 사업 시행에 따른 인구변화 및 고용효과 ○ 선박 통행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 해양레저·관광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 수산업 활동 현황과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환경성 평가 분야	해양물리	○ 수온, 염분, 파랑, 조석 등 해양물리 현황 및 분석 결과 ○ 해수유동 변화 예측, 부유사 확산 예측 및 영향의 범위 ○ 해양물리 특성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해양수질·퇴적물	○ 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수질·퇴적물 현황, 예측·평가 및 저감 방안 ○ 사업 시행에 따른 작업공정별 발생 오염원 분석 ○ 해양환경기준(수질·퇴적물)과의 적합 여부 및 기준 초과 시 해양수질·퇴적물 관리 방안
	해양지형	○ 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지형 현황 ○ 사업 시행에 따른 해양지형의 변화 예측(해안선 변화 포함) ○ 해양지형의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방안
	대기질·기상	○ 대기질 상태 및 사업 시행에 따른 변화와 저감 방안 ○ 기상 요소의 현황 및 분석 결과 ○ 최근 10년간 태풍, 안개 현황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부유생태계	○ 동·식물 플랑크톤의 현황 및 분석 결과(종조성, 군집구조, 분포 등) ○ 사업 시행에 따른 부유생태계 영향 예측 및 평가 ○ 부유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저서생태계	○ 저서생태계(조간대, 조하대의 저서동물, 해양식물 포함)의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에 따른 저서생태계 영향 예측 및 평가 ○ 저서생태계(법정 보호생물 포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유형생태계	○ 어류 등 유형생물의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에 따른 유영생태계 영향 예측 및 평가 ○ 유영생태계(법정 보호생물 포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해양조류·포유류	○ 해양조류(바닷새) 및 박쥐, 포유류(고래류, 기각류 등), 바다거북의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에 따른 해양조류·포유류 영향 예측 및 평가 ○ 해양조류·포유류(법정 보호생물 포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경관·빛	○ 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연안 경관 변화, 영향 범위 및 저감 방안 ○ 사업 시행에 따른 빛 공해 예측·평가 및 저감 방안
	소음·진동	○ 사업 대상 해역의 배경소음·진동(수중, 해상)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예측·평가 및 저감 방안
	전자기장	○ 사업 대상 해역의 전자기장 현황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에 따른 전자기장 예측·평가 및 저감 방안

비고

1. 법정 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을 말한다.
2. 법정 보호생물은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말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제17조제3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조사주기
1.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 다만, 1.5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동일하게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시행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업 시행 중 반기별 1회
2.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후 3년 까지	사업 시행 중 분기별 1회, 사업완료 후 반기별 1회

비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등의 의견 통보 시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을 조정한 경우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해양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조사기간에서 “사업시작”이란 개발사업의 착공시점을 의미하며, “사업완료”란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을 의미한다.
3. 조사주기에서 “반기별”, “분기별” 조사의 시점은 사업 시행 중에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완료 후에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분기별 조사 시 세부평가항목별로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9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요소
1. 참여기술인 능력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이적계수 등에 따라 평가
2. 업무여유도	참여기술인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3. 업체 능력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공동도급 등에 따라 평가
4.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비고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질·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기준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자격만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다. 기술자격자의 인정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을 말한다.
- 1) 토목분야 중 해양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항만 및 해안 기술사
 - 2) 어업분야 중 수산양식기술사, 어업기술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 3) 환경분야 중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기술사,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토양환경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기사
- 라. 학력·경력자의 기술등급 인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라 다.목 기술자격자의 해당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바를 따른다.
- 마.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자격기준

구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	1)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과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과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위 표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나.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용역 감독업무와 연구업무
- 위 표에서 “환경 분야”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중 ‘자. 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 해양)’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4.의 환경평가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로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분야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총괄		1명 이상	특급 이상	1) 기술사: 토목분야, 어업 분야, 환경분야 2) 기사: 토목분야, 어업분 야, 환경분야 3) 산업기사: 토목분야, 어 업분야, 환경분야	총괄의 기술자격 인정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 득할 수 있는 해 양, 수산, 환경 등 관련 학과
		1명 이상	초급 이상		
적정성평가 분야		1명 이상	중급 이상		
환경성 평가 분야	해 양 환 경	1명 이상	특급 이상	1) 기술사: 토목분야, 어업 분야 2) 기사: 토목분야, 어업분 야 3) 산업기사: 토목분야, 어 업분야	해 양 환 경 분 야 의 기술자격 인정분 야의 국가기술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해양, 수산 등 관련 학과
		1명 이상	초급 이상		
환경성 평가 분야	기 타 환 경	1명 이상	고급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2) 기사: 환경분야 3) 산업기사: 환경분야	기타 환경분야의 기술자격 인정분 야의 국가기술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해양, 수산, 환경 등 관련 학 과

비고

1. 가.목 표의 기술인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중 2.자격기준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목 표의 기술자격 인정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중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항목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는 아래 표와 같이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저서동물, 해조류 등의 해양생태계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공통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2대
	광학현미경 또는 실체현미경	2대
	분광광도계 또는 형광측정기	1대
	유량계(Flowmeter)	2대
공통	냉동상자(아이스박스)	1개
	분석실	1실
식물플랑크톤	채수기	1대
	네트(Kitahara type net, 구경 30cm, 망목 20 μ m)	1세트
동물플랑크톤	원추형 네트(망구 60cm, 망목 200 μ m)	1세트
	Folsom 또는 Motoda형 분할기	1대
어란 및 자치어	RN80 네트(망구 80cm, 망목 300 μ m)	1세트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그랩(Grab), 기타 채니기 1식	1대
연성조간대(갯벌) 대형저서동물	원통형코어 또는 켄코어, 기타 채니기 1식	1대
경성조간대(암반) 대형저서동물	50×50cm 방형구	2기
해조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제24조 관련)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해양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 1) 해양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해양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 2)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 나. 현황조사 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해양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협의완료 전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해양보호생물 등 법정 보호생물 등에 대한 해양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 마.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법정 보호생물 등을 누락한 경우
- 바. 양식장, 마을어장, 중요 생물의 서식처 등 해양환경변화에 민감한 구역을 누락한 경우
- 사.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 (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하게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33조제1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경우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 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34조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8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양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양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바.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양이용협의등의 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8호					
1)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비고

1. 아목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란 ‘[별표 5]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참조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제3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6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법 제46조 제4항제2호에서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해양이용협의서

[어업면허 신청,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 공유수면 일시 점용 신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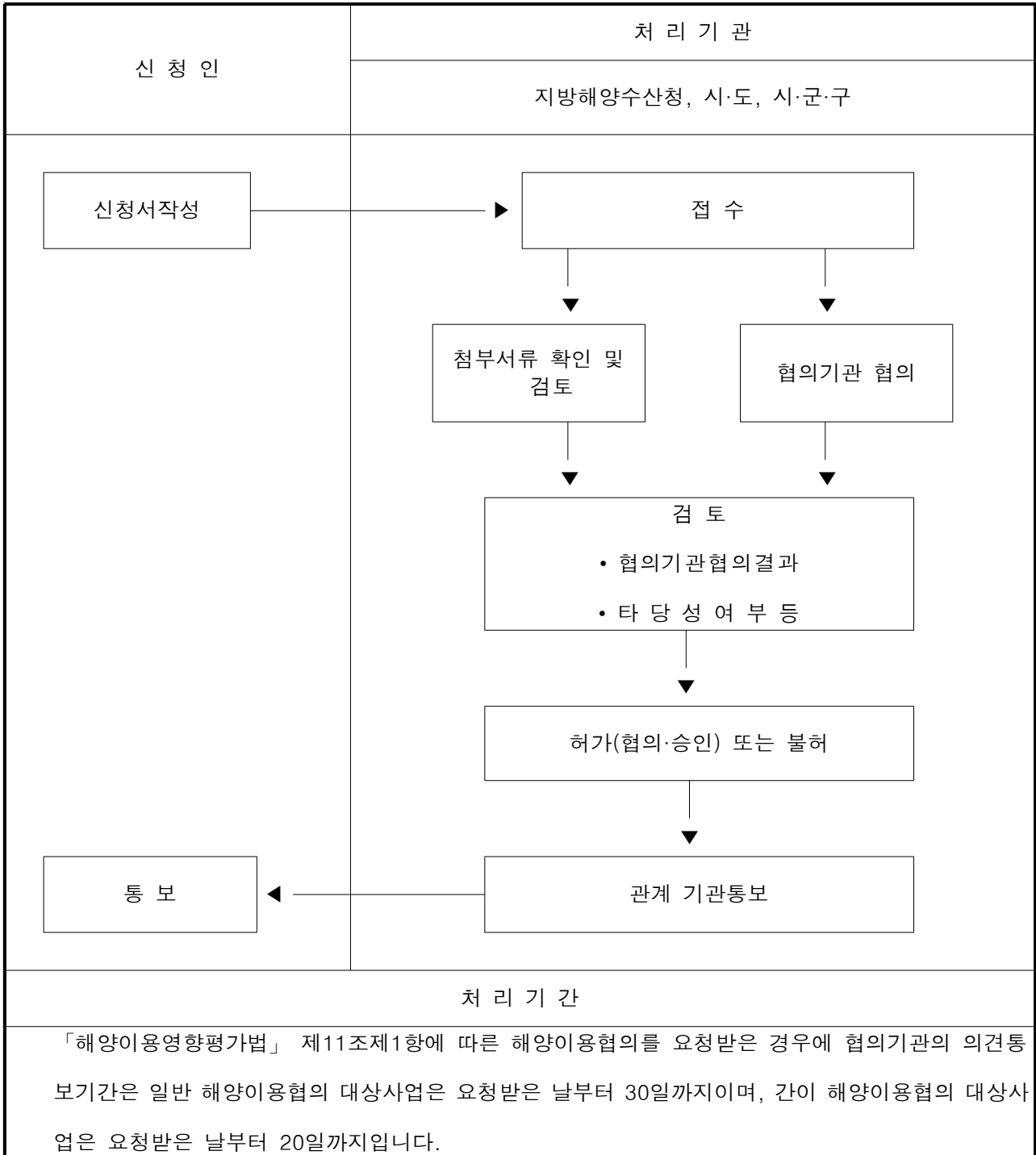
(앞 쪽)

해양이용협의서		☐ 어업면허 신청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신청 ☐ 인공구조물의 설치 없는 공유수면 일시 점용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 청 인	①성 명	②전 화 번 호		
	③주 소			
해양이용협약에 관한 사항(※ ⑧협의의견 회신일은 면허·승인기관이 작성하며, 어업면허 신규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내용 중 변경 전 란만 작성합니다)				
④면허·승인기관				
⑤허가(승인)번호		⑥허가(승인) 연 월 일		
⑦해 역 이 용 협 의 기 관		⑧협의의견 회 신 일		
⑨신 청 해 역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⑩면 적		m ²	m ²	
⑪목 적				
⑫기 간		. . . ~ .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없음
1. 어업면허 신청 가. 사업계획서 나. 해면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신청, 인공구조물의 설치 없는 공유수면 일시 점용: 신청해역이 표시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착 공
[] 준 공
[] 공사 중지
[] 공사 재개

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 현황	사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위치	
	평가 협의일	
통보 내용	착공일	
	준공일	
	공사 중지 · 공사 재개	중지일
		공사 재개일
		중지 또는 재개 사유
		공사 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 착 공
[] 준 공 을
[] 공사 중지 (를)
[] 공사 재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처분기관		면허등(지정·허가·협의 또는 승인·면허) 일시		
협의기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① 구분	② 협의내용	③ 이행계획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⑤ 이행주체	⑥ 이행예정시기
전체				
항목별 · ·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⑦ 공정율(%)	⑧ 이행(조치) 내용	⑨ 이행 완료일자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작성요령

-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해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해야 한다.
-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0000년도 공사/운영시 제O차년도 조사결과)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							
사업장 주소								
사업자 성명		전화						
사업자 주소								
협의기관			처분기관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	년	월	일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문서번호)	년	월	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공정율(%)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	(년)	
	금회	년	월	~	년	월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가)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나) 해양이용협의등의 협의 또는 평가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전체 공정율 및 세부 공정율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양이용협의등(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일자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결과 및 비교·분석

가. 분야별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결과

- 해양이용협의서등의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 해양이용협의서등에서 제시된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 해양퇴적물 등의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년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분야	적정성평가□		환경성평가□		
세부 평가항목	해양물리□ 해양수질·퇴적물□ 해양지형□ 대기질·기상□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공간이용□ 사회경제□ 유영생태계□ 해양조류·포유류 □ 경관·빛□ 소음·진동□ 전자기장□				
구분	해양환경 현황		해양환경영향 예측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변동 사유
	해양이용영향 평가서 등	해양이용영향 평가서 등 보완			
정점도	정점도 추가	정점도 추가	정점도 추가	정점도 추가	
조사시기 및 주기	- 연1회 - 하계/동계 포함				

구분		해양환경 현황				해양환경영향 예측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조치사항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 보완									
조사항목	조사정점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일시	조사결과	저감방안 수립 전	저감방안 수립 후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일시	조사결과		
수온													
염분													
pH													

나. 조사결과 비교 및 저감 방안

분류			조사결과 비교		예측달성		저감방안
분야	세부 평가 항목	조사 항목	해양이용영향평가 서 등 예측치	해양환경영향조 사 결과	달성 여부	사유	
적정 성평 가	공간 이용						
	사회 경제						
환경 성평 가	해양 물리						
	해양 수 질· 퇴적 물						
종합 결과							

4. 협의내용 이행현황

가. 해양이용협의서등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지형·지질,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소음·진동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세부 평가항목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	점검 결과

나.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다.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율(%)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고

5. 처분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계획)

조사일시	처분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6.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해양이용협의서등의 해양환경현황 예측과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 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기재합니다.

7. 부록

가. 해양환경영향조사자 현황

1) 해양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업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실험실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주소)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 등록	[] 변경등록
----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공고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1. 기관(업체) 명칭
2.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3. 주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5. 실험실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6. 그 밖의 사항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승계인	기관(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피승계인	기관(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승계구분	☐ 상속 ☐ 양도·양수 ☐ 합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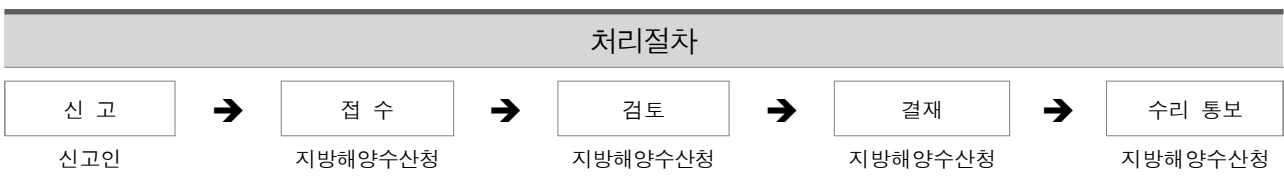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휴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기관(업체)명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등록일자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주소)			
폐업일		휴업일	
사유			
구분	[] 폐업		[] 휴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 검토 지방해양수산청	→ 결재 지방해양수산청	→ 수리 통보/ 공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	------	-----	------

1. 보고인 현황

기관(업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2. 대행사업 현황

대행사업명			
사업 소재지(주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의 종류		시행근거 (사업코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대행업무 실적보고 구분	[] 계약체결, [] 계약 및 참여기술자 변경, [] 계약이행		

3. 계약 현황

발주자(기관)		전화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공동계약자: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재대행자(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재대행금액	백만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번호:)	재대행계약기간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	백만원	낙찰률	%
협약내용 통보일자		준공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참여 기술자 현황

대행계약(변경계약) 체결 시									
연번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평가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수행 형태	참여기간

대행계약 이행 시									
연번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평가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수행 형태	참여기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

작성방법

- 보고인 현황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합니다. 또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 기술자)에는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행사업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대행사업명: 대행계약서에 기재한 사업명을 기재
 - 사업 소재지: 대행사업 예정지의 대표 소재지(주소)를 기재
 - 사업규모: 사업의 면적 등 규모를 단위와 함께 기재
 - 사업기간: 사업의 예정된 사업기간을 기재
 - 사업의 종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
(예시) [별표 1] 1. 일반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바다골재의 채취, 나.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인 경우 [별표 1] 구부의 '바다골재의 채취'로 기재
 - 시행근거(사업코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에 따른 해당 사업의 협의 시행근거를 기재
(예시) [별표 1] 1. 일반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바다골재의 채취, 나.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인 경우 '별표 1-바다골재의 채취-나'로 기재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간이 해양이용협의, 일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재협의 포함),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환경보전방안(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로 기재
- 계약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계약자: 단독 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 현황만 기재하고,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자 모두를 기재
 - 낙찰률: 발주금액 대비 낙찰(계약)금액의 비율을 기재
 - 재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를 준수하여 재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만 재대행자 정보를 기재
- 참여 기술자 현황은 대행계약 체결 보고 시 참여 기술자를 기재하고,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서 변경 전후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소속회사: 참여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명
 - 기술등급: 기술자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기재, 등급이 인정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유 기술자격 또는 주 경력을 기재
 - 평가 분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세부 평가항목(공간이용, 사회경제, 해양물리, 해양수질·퇴적물, 해양지형, 대기질·기상,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해양조류·포유류, 경관·빛, 소음·진동, 전자기장)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
 - 전문 분야: 해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그 외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
 - 담당 업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가서등 검토·협의, 용역감독자 중에서 해당 업무를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 참여 기간: 참여 기술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수행 형태: 단독계약, 공동계약,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생년월일:)

3.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